

앞서가는 송파, 당신을 담습니다



송파구



수신자 건설폐기물배출자 133개소
(경유)

제목 건설폐기물배출자 폐기물처분부담금 안내

1.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**2018.1.1.부터** 모든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, 발생된 폐기물의 재사용 등 순환이용 및 적절한 처분으로 천연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줄여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「**자원순환기본법**」 이 시행되고 있습니다.
3. 그리고 「**자원순환기본법**」 제21조에 건설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**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** 건설폐기물배출자가 **폐기물처분 부담금을 부담**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리오니, 귀 사업장에서 발생·배출·처리하는 폐기물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아울러, 귀 사업장에서는 2018년 발생하는 **폐기물에 대한 감량 실천 및 재활용 활성화로 폐기물처분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폐기물을 관리**하여 주시기 바라며, 2018년 이후 배출량에 대한 **폐기물처분부담금 수시 및 정기 납부에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 및 준비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폐기물처분부담금 안내문 1부.
2. 진행중공사-건설폐기물배출자 명단 1부. 끝.

송 파 구 청 장



★주무관 이지현 도시청결팀장 송춘섭 자원순환과장 02/09 정용석

협조자

시행 자원순환과-3347 (2018.02.09.) 접수 ()

우 05552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(신천동) / http://www.songpa.go.kr
전화 (02)2147-2860 /전송 (02)2147-3875 / 이메일:ljhSORA@songpa.go.kr / 부분공개(5,6,7)

신고번호 제 201000404호

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

신고인	상 호(명 칭)	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	사업자등록번호	203-83-00918
	성 명(대표자)	본부장	생 년 월 일	
	주 소(사업장)	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(서소문동)	전화번호	02-772-7223
공사 내역	공 사 명	지하철 9호선 918공구 건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	공사기간	2010.08.27 ~ 2018.12.31
	공사(배출) 현장주소	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7동 아시아선 수촌아파트 ~ 삼전동 구 잠실병원 앞	전화번호	02-772-7223
	순환골재의무사용	해당사항없음		
발주자	상호(명칭)	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	대표자	본부장
	주 소	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(서소문동)	전화번호	027727223

건설폐기물 분리배출계획 종류별 처리방법별 구분하여 배출

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발생 즉시 위탁처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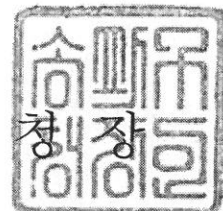
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및 처리 계획

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및 발생주기					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					
분류	분류번호	종류	발생량 (톤)	발생주기	처리구분	운반자	운반량 (톤)	업소명	처리방법	처리량 (톤)
불연성	40-01-01	건설폐재류: 페콘크리트	10,158		위탁	삼환환경(주)	10,158	삼환환경(주)	중간처리(파쇄,분쇄)	10,158
불연성	40-01-02	건설폐재류: 페아스팔트 콘크리트	20,150		위탁	삼환환경(주)	20,150	삼환환경(주)	중간처리(파쇄,분쇄)	20,150
가연성	40-02-06	폐지류(나무의 뿌리, 가지 등 임목재기물이 5년 이상인 경우 제외한다)	100		위탁	(주)지안우드	100	(주)지안우드	재활용(파쇄,분쇄)	100

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2010년 09월 01일

서울특별시 송파구



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계획

시설명	처리능력	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	처리 예상량 (톤)	순환골재 등의 생산량	사용량	사용용도

< 변경사항 >

일 자	내 용	확 인
2014.01.27	○ 폐기물 배출량 증가 - 페콘크리트(40-01-01) 변경전 5,750톤-> 변경후 10,158톤(+4,408톤) - 페아스팔트콘크리트(40-01-02) 변경전 8,838톤-> 변경후 20,150톤(+11,312톤)	이향림
2014.08.13	○ 폐기물 성상추가 - 폐목재(40-02-06) 100톤 운반및처리-(주)지안우드, 재활용(파쇄/분쇄)	이향림
2016.02.18	○공사기간 연장 변경 -변경전:2010.08.27.~2016.02.17. -변경후:2010.08.27.~2017.12.31.	이지현
2018.02.02	○공사기간 연장 -변경전: 2010.08.27~2017.12.31 -변경후: 2010.08.27~2018.12.31 ○무거래로 인한 삭제 -폐목재(나무의 뿌리,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)100톤/운반-(주)지안우드/처리-(주)지안우드/재활용(파쇄, 분쇄)	이지현

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·납부 안내

□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 (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21조)

부담금 부과 요건	부담금 납부의무자	부담금 부과·징수기관
사업장폐기물(건설폐기물포함)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	사업장폐기물배출자 (건설폐기물배출자)	한국환경공단

□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(「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」 제19조 및 제20조)

구 분	대상자	신고기한	신고내용	신고처
정 기 신 고	계속 사업장 (수시신고자 외)	매년 3월 31일까지	폐기물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	한국 환경 공단
수 시 신 고	건설공사 등에 따른 사업장 중 해당 폐기물의 배출이 종료된 경우	폐기물배출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		

* 정기신고: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7호(사업장폐기물 상시배출자)

* 수시신고: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8호(건설폐기물 배출자) 및 제9호(사업장폐기물 일시배출자)

* 일시배출자라도 배출기간이 2개 연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: 전년도 배출량은 당해연도 3월30일까지, 당해연도 배출량은 배출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.

☞ 정기신고는 2019년에 최초로 신고(2018년도 소각·매립 처분량부터 대상임)

□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금액 (「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」 제18조)

$$\text{폐기물 소각·매립 처분량(kg)} \times \text{부과요율(원/kg)} \times \text{산정지수}$$

○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

폐기물 유형		부과요율	
		매립하는 경우	소각하는 경우
사업장폐기물	불연성	kg당 10원	-
	가연성	kg당 25원	kg당 10원
건설폐기물		kg당 30원	kg당 10원

○ 산정지수: 최초 적용연도 1 (그 다음 해: 전년도 산정지수×가격변동지수)

□ 폐기물처분부담금 문의처

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궁금점이 있으시면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 자원순환진흥처 폐기물처분부담금팀(T. 제도 문의: 032)590-5081~86, 시스템 문의: 032)590-5086~87, FAX: 032)590-409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36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법 시행령 과태료부과기준[별표7]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(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사항, 신고 서식 등)은 인터넷 <http://www.budamgum.or.kr>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